

2015.12.22

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

1. 개정이유 및 시행일자

개정이유

- 국민 소득 수준의 향상과 소비의 대중화 등을 고려하여 **녹용, 방향용 화장품, 고급사진기를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서 제외**되고
- **보석 및 귀금속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제조하여 반출한 자에게 부과**하는 방식으로 변경합니다.
- 경마장 장외발매소 등에 입장하는 행위를 줄이기 위하여 경마장 장외발매소의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2천원으로, 경륜장 장외매장 및 경정장 장외매장의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800원으로 각각 인상되었습니다.
- **시행일자 : 16. 1. 1.(금)**

세인 소식지

www.seincustoms.com

2015.12.22

주요내용

- ① 녹용, 방향용 화장품 및 고급사진기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(제1조제2항).
- ② 경마장의 장외발매소, 경륜장 장외매장 및 경정장 장외매장의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율을 인상함(제1조제3항).
- ③ 보석 및 귀금속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방식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경우로 함(현행 제3조제1호 삭제).

경과규정

- > 녹용, 방향용화장품 및 사진기와 그 관련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
개별소비세법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녹용 및 방향용 화장품 및 사진기와 그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 및 다목, 제1조제2항 제2호 가목3) 및 제18조 제1항 제12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- >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라 16년 1월 1일부터 녹용, 방향용 화장품(향수, 코롱(Cologne), 가루향, 향낭), 고급사진기는 개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따라서 22일 현재부터 연말까지는 종전과 같이 기준가격 초과시 과세처리하며, 16년 1월 1일부터는 과세 제외됩니다.